

6월 수출현안 · 수입제도 모니터링 [인도네시아]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냉장·냉동식품 수입항 추가

- 법령명 : 냉장·냉동식품 수입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2015년 제84호 개정에 대한 무역부 장관령 2016년 제40호
 - 발효일: 2016년 6월 7일 / 시행일: 2016년 8월 7일
 - 개정 목적: 냉장·냉동식품 수입을 좀 더 원활하게 향상시키기 위함
 - 법령 주요 내용
 - 본 개정령에 따라 해상항(Bitung 항구) 1곳이 신 수입항으로 추가됨
(단, 육로항 및 항공항은 추가 없이 기존 법령과 동일함)
 - 제5조에 따르면, 냉장·냉동식품은 다음과 같은 수입항을 통함
 - ① 육로항: Cikarang Dry Port (Bekasi)
 - ② 해상항: Belawan 항구(Medan), Tanjung Priok 항구(Jakarta), Merak 항구(Cilegon), Tanjung Emas 항구(Semarang), Tanjung Perak 항구(Surabaya), Soekarno Hatta 항구(Makassar), Batu Ampar 항구 (Batam), Bitung 항구(Bitung)
 - ③ 항공항: 인도네시아 전 국제공항
- *괄호 안은 해당 지역명임

* 출처 : 인도네시아 무역부 공식홈페이지 (www.kemendag.go.id) / 2016년 6월 30일, Bisnis Indonesia 신문 (www.bisnis.com)

2. 수입전통약품 수입제도 및 규정

○ 수입전통약품 등록 신청서류

- 전통약품 사업허가서 사본
- 졸업장 사본, 약사 면허증, 해당 사업장 소재의 보건부에서 발급한 업무증명서
- 책임자로서의 약사 증명서
- 등록신청 할 전통약품 샘플
- 인쇄할 제품표시사항
- 원료명
- 생산국의 설명서
- 해당 생산국에 소재한 인도네시아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유판매증명서 (Free Sale Certificate) 원본
-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지정한 곳에서 발급한 실험검사인증서
-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전통약품의 안정성을 위한 독성검사 자료

○ 수입전통약품등록절차

- 신청자는 인니 식약청 전통약품 등록창구에서 등록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함
- 신청자는 작성한 등록신청서를 해당 등록창구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함
- 등록절차기간은 최대 6개월로, 인니 식약청 건강보조식품 및 전통약품 감독부가 담당
- 등록이 허가될 경우, 등록번호가 발급됨
- 제출서류가 부족할 경우 등록이 유예되므로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완벽히 구비하고 추가 양식을 작성하여 해당 등록창구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거절됨
- 등록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재신청함

*출처: 인도네시아 식약청 (www.pom.go.id)

3. 축산물 유래 가공식품 수입시 식약청의 SRP 필요

- 근거 : 가축의 사육 및 위생에 대한 법률 2009년 제18호(Undang-Undang No.18 Tahun 2009 tentang Peternakan dan Kesehatan Hewan), 가축의 사육·위생법 개정에 대한 법률 2009년 제18호의 개정 법률 2014년 제41호 59조 3항에서 다른 가공식품수입에 관한 규정
- 축산물 유래 가공식품 수입업자는 축산물 유래 가공식품 수입을 위해 무역부에서 수입허가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 무역부에서 수입허가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식약청 식품인증·검사처(Direktorat Inspeksi dan Sertifikat Pangan)에서 발급한 축산물 유래 식품추천서(Surat Rekomendasi Pangan Asal Hewan, 이하 'SRP')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SRP 발급은 식품의 영양소, 등급, 안전성 측면에 대해 강조한 식품에 대한 법률 2012년 제18호(Undang-Undang No.18 Tahun 2012)를 참조함
- SRP를 발급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a. 신청서
 - b. 농업부의 산하기관인 가축사육위생처(Direktorat Jenderal Peternakan dan Kesehatan Hewan)에서 발급한 제품수입추천서(Rekomendasi Pemasukan Produk)
 - c. SRP 신청 제품의 기존에 발급받은 수입허가서(SKI)
 - d. 기존에 수입허가서(SKI)를 발급받은 적이 없는 제품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생산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또는 자유판매증명서(Free Sale Certificate)
 - 분석증명서(Sertifikat Analisa)
- 인간 및 가축의 건강과 농장의 환경을 위협하는 가축전염병 위험이 있는 인도

네시아로 수입되는 축산물 유래 가공식품은, 식약청의 추천서가 발급되기 전에, 농업부로부터 기술동의서(Persetujuan Teknis)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함

*출처 : 2015년 7월 6일, 인도네시아 식약청 공문(Surat Edaran No. ST.06.533.07.15.13603),
2016년 3월 15일, 인도네시아 농업부 산하의 가축사육·위생처(Direktorat Jenderal Peternakan dan Kesehatan Hewan) 공문

4. 식품업계 설탕 부족 호소, 인니 정부 원당 38만 톤 수입 계획

- 인도네시아 내 설탕 수요가 공급을 훨씬 웃돌면서 식품 업계에서 위기감이 높아져 이에 인니 정부는 근래에 38만 1,000톤에 달하는 원당을 수입하기로 함
- 살레 후신 산업장관은 인도네시아정제설탕협회(AGRI) 측으로부터 이번 주 내 수입설탕의 공급되며 생산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들었으며, 지난 주에는 설탕부족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주에는 설탕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 밝힘
- 이에 앞서 인도네시아 식음료업체연합(Gapmmi)의 아디 회장은 국내 식품, 음료 업체 10개사 이상이 정제 설탕 부족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으며, 심지어 공장이 임시 폐쇄될 처지라며 업체들로부터 설탕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힘
- 또한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의 하리야디 회장도 설탕 공급 부족이 식품·음료 업계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니 정부는 산업용 설탕 공급 부족을 초래한 관료제도를 타파해야 한다고 호소함

* 출처: 2016년 6월 16일, 자카르타 경제신문 (www.pagi.co.id)

1. 인니 관세청, 불법육류수입 특별단속 실시

- 인니 정부는 라마단(금식) 기간 동안 육류 공급을 안정화시키고 급격한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나, 일부 불법수입육류 유통업자가 활개를 치고 있음
- 이에 관세청은 5월 16일 Tanjung Priok 항구의 Mustika Alam Lestari 터미널을 통해 7개의 컨테이너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당 컨테이너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함
- 조사결과 PT. CSUB가 수입한 수입육류는 통관에 있어 수입업자가 수입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허위로 보고하고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기입한 수입품통보서(PIB)를 제출하여 불법 수입품으로 판명되었으며 관세청은 해당 제품이 통관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밝힘
- 5월 21일, 해당 제품의 샘플을 실물검사를 한 결과, 9,273개의 박스에 호주산 및 뉴질랜드산의 냉동육류(쇠고기의 심장/간/목살/신장/허파/우족)가 발견됨
- 해당 제품의 샘플검사결과 175,000kg의 화학원료(Monocalcium Phosphate Feed Grade)로 보고한 수입품통보서(PIB)의 내용과 실제로 수입된 제품과 일치하지 않음
- 이와 같이 해당 불법 수입품은 ‘인도네시아로 육류 및 육류가공품 반입에 대한 농업부 장관령 2015년 제58호’를 위배하였으며, 이 외에도 허위로 수입품통보서(PIB)를 작성한 것과 관련하여, ‘통관에 관한 법률 2006년 제17호’를 위배하였음

*출처: 2016년 6월 16일, 인도네시아 관세청 (www.beacukai.go.id)

2.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만 특혜관세 적용

-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이하 ‘한국대사관’)이 지난 24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직접 운송일 경우에만 FTA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함

- 한국대사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 제19조 ‘직접운송법칙’에는 FTA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출입 물품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만일 제3국을 경유할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절차 제19조는 제3국을 경유했을지라도 직접운송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증명서류(통선하증권, 비조작 원산지증명서 등)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한국대사관은 인도네시아 세관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접운송이 아닌 제3국 경유 운송에 대해 큰 문제를 삼지 않았으나 근래 들어 한-아세안 FTA 규정을 보다 정확히 집행하고 있어 한인 기업인들의 주의가 요청된다고 밝힘
- 앞으로 한-아세안 FTA상 직접운송이 아닌 제3국 경유 노선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선사 또는 한국의 세관 수출입 지원센터(서울세관, 부산세관 등)에 문의해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함

* 출처: 2016년 6월 27일, 데일리 인도네시아 (www.dailyindonesia.co.kr)

III 통관문제사례

* 통관거부 사례를 업데이트하는 인도네시아 정부기관 웹사이트가 부재하여 현장 사례 및 뉴스로 대체함.

1. 인니 식약청, ‘Palm Oil Free’ 라벨부착제품 전량회수

- 인니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Palm Oil Free’ 라벨이 부착된 이태리산 식품을 전량회수 조치함
- 해당 불법제품의 전량회수는 인니 무역부가 인도네시아팜오일협회(Gapki)로부터 탄원서를 받은 후 조치되었음
- Roy Sparringga 인니 식약청장은 해당 제품이 식약청의 허가과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수입업자를 불러 해당 제품의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허가 과정에 있어 'Palm Oil Free' 라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해당 라벨은 제품이 인도네시아로 반입된 이후에 제품에 부착된 것으로 유추된다고 밝힘

- 또한 각 지역 식약청에 해당 제품의 유통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식약청은 수입제품에 대해 더욱 강력하게 감독할 것이라 밝힘
-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식품의 안정성 문제뿐 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신용을 실추시키는 라벨링 문제와 관련성이 큼

*출처: Koran Sindo (www.koran-sindo.com) 및 Repulika (www.repulika.co.id)

2. 인니 식약청, 특별단속 실시

- 인니 식약청은 5월 30일부터 6월 7일에 걸쳐 경찰청, 관세청, 정보통신부와 합동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전역의 32개 주와 자카르타, 스마랑, 수라바야 지역의 7개 관세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312개 품목의 불법제약품(56억 루피아 상당)을 적발함
- 또한 관세청이 올 초 1월부터 6월 초까지 검사한 6,412개의 택배/우편물 중 5,916개의 택배/우편물이 보류 및 금지상태임
- 금번 특별단속에서는 스테미너 강화제품 및 슬리밍 제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352개 품목의 불법 스테미너 강화제품(10억 루피아 상당의 총 5,915개 제품)과 24개 품목의 불법 슬리밍 제품(21억 루피아 상당의 총 51,751개 제품)이 적발됨
- 상기 제품 외에도 식약청은 다음 표와 같은 불법 제품을 적발함

번호	적발된 불법 제품	적발 품목 수	적발된 금액
1	의약품	148개 품목	35억 루피아 상당
2	전통약품	118개 품목	14억 루피아 상당
3	화장품	533개 품목	51억 루피아 상당
4	건강보조식품	40개 품목	13억 루피아 상당
5	제약원재료	19개 품목	0.039억 루피아 상당
6	불법 제약품	72개 품목	0.134억 루피아 상당
7	불법 식품	6개 품목	0.095억 루피아 상당

- 불법 제약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수입산 불법 의약품이 비공식 유통경로를 통해 유통됨
 - 국내의 불법유통경로를 통해 불법 의약품이 유통됨
 -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제약품이 개인 택배/우편물을 위장하여 유통됨
 - 온라인 및 아울렛을 통해 불법 건강보조식품이 유통됨
 - 웹사이트에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게재하여 불법 제약품을 광고함
 - 택배 및 우편 서비스를 통해 시중에 유통됨

*출처: 2016년 6월 27일, 인도네시아 식약청 (www.pom.go.id)